

광주지방법원 2021. 1. 15 선고 2020나587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1. 15 선고 2020나58792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0. 5. 26 선고 2019가단52913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명

변론 종결 2020. 12. 18

판결 선고 2021. 1. 15

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. 5. 26. 선고 2019가단52913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7. 2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나.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. 7. 27. 접수 제1323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 고 의 항 소 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O 제1심 판결 제4쪽 밑에서 3번째 줄의 "달릴"을 "달리"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 렵 다 면 원 고 의 이 사 건 청 구 는 이 유 있 어 인 용 하 여 야 한 다 . 제1심 판결 은 이 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재현판사 이제승판사 강애란

별지